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고	2018. 6. 26.(화) 조간	배포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김종호 팀장(3145-8136), 김종환 수석조사역(3145-8142)	

제 목 : 통장·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

1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 2018.1~5월중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은 811건으로 전년동기(339건) 대비 139.2% 급증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상담 및 발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

○ 이는 대포통장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식 제고로 불법 문자메시지를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에 기인

□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이자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 통장을 매매(대여)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

(단위 : 건)

광고매체	2017년		2018.1~5월(B)	증감(률) (B-A)
		1~5월(A)		
문자메시지	1,181	303	800	497 (164.0% ↑)
인터넷 등	84	36	11	△25 (69.4% ↓)
합 계	1,265	339	811	472 (139.2% ↑)

2 불법 문자메시지 주요 유형 및 사례

- ◆ 불법업자들은 통장(계좌)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으며,
 - * 신규계좌 개설시 심사 강화,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대표통장 근절 노력에 기인
- 통장 거래의 불법성을 희석시키고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지능화되고 교묘한 문구를 사용하여 금융소비자를 현혹

① (체크카드·현금카드 대여)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 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 주면 된다고 광고

통장은 본인이 직접 갖고 계셔서 입금 출금 내역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희도 사장님 계좌에 수금을 받으면 출금을 해야 하기때문에
저희쪽으로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보내 주면 되는데
 직접 보내줄 필요 없고요
 지역 상관없이 주소지 알려주면 저희가 기사님 보내드려요 그분 전달 해주면 되고요
 3일후에 주소지 알려주면 양도받은 카드는 다시 보내드려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임대해줬다 이야기만 안하면 되세요

· 카드로 현금 지급기에서 일일 출금 한도 6백만원이신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 개인 서류 제출이나 비용 발생 전혀 없습니다.

저희 업체의 물류대금 결제를 위한 안 쓰시는 "계좌"를 접수해 주시면
 1개 접수시 300만원 까지 지급해 드리며, 최대 3개 "계좌" 까지 접수 가능 합니다.
 수당 지급은 당일 지급해 드립니다. (‘통장’,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부분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 입-출-금-카-드-를 대-여-해-주-시-게 되시면
 한 계:(은행):좌 당 300만원씩
 2개당 600만원 임대료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통_장_신_분_증_사_본_등 전혀 요구없으며
 잔고없는 현:(카드):금 나 체:
 {카드}:크 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② (정상업체 가장) “매매”, “삽니다” 등의 직접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거래처럼 현혹하고,
 ○ 세금감면,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제시하면서 유통회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

<p>계속되는 불경기속에 조금이나마 도움드릴수있을까 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p> <p>당사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u>물류업체입니다.</u> 이런 불경기에도 다행히 당사매출이 작년대비 늘어나게 되었지만, 매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정부에서 받는 <u>물류관세 혜택이 중단되는 상황입니다.</u></p> <p>당사가 대기업이라면 당연히 관세를 납 혜택이 없다면 전반적인 회사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u>[체*크][카드]</u>를 임대 받고 있습니다.</p>	<p><u>인터넷쇼핑몰 입니다.</u> 님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니 부가세가 많이 나와서 거래실적 분산용으로 사용할 <u>통장을 임대받아서 세금을 줄이고자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u></p> <p><u>접수해 주시면</u> 1개계좌 300만원, 2개650만원 , 3개1000만원을 선불로 드리면서 사용하는 겁니다.</p> <p>저희가 거래하는 곳이 주로 유통업체나 도,소매상인데</p> <p>사장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유통회사는 세금이 가장 골치아픈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에 대해서는 매출을 잡지 않으려고 통장을 이용합니다.</p>
--	---

- ③ (고액의 대가 제시) “통장 1개 400만원, 2개부터는 각 500만원을 선지급”
 한다거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고액의 현금을 즉시 지불한다고 강조

<p>사.설.싸.이트 업체입니다 홍보 문자드린건 아니구요 매.출.이 많다보니 출.금.용*통*장이 필요해서 문자남깁니다. <u>*통*장* 한개 400지급</u> <u>*통*장* 두개부터 각500씩 지급</u> 사용가능한 *통*장* 확인되면 선*지*급 해드리고 10일 사용합니다.</p>	<p>주류세 감;면;차 대금 수금시 사용할 체;크, 현;금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u>단기간 3일간 사용하며 당일지급 80만원</u> <u>3일간 총 240만원지급되십니다.</u></p> <p>한 명의 당 "3"장까지 신청가능하며 <u>3일 진행 후 카드는 다시 반송해드립니다.</u> (기간 설정가능)</p>
---	---

④ (안전거래로 현혹)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보이스 피싱 업체 아님” 등으로 안전한 거래를 빙자

<p>▶저희는 <u>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3가지도입후</u> 진행하고 있습니다</p> <p>*계*좌*빌려주시면 한*계*좌*당 주에 200씩드리고있습니다.</p> <p>연말이라 급구하고있습니다.</p> <p><u>저희보이스피싱이나 그런업체아니구요</u></p>	<p>쌍방간 안전제일 무사고 무피해!! <u>불법 아닌 편법이며 알바,부업 용돈벌이라 편히 생각하세요.</u></p> <p>결제는 당일당일 지급을 해드리고있구요 저희가 1-5시사함에 입금처리되고있습니다(개인명의로입금)</p> <p>--주의사항--</p> <p>반드시 문자입출금통지서비스신청하셔야 진행되시는 상황 본인하 직접확인하셔야합니다(필수사항)</p> <p>그리고 30분지연출금서비스와 은행모니터링강화로인해서 저희가 저희회사 직원입금부분및 세금감면함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진행하지도진행할수도없음을 말씀드립니다.</p>
---	---

⑤ (서민심리 악용) “필요 수량 한정되어 조기 마감”, “알고 보면 쉬운 채테크”, “생활안전자금 마련”, “용돈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 등의 내용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

<p>저희 저희회사에서현재 [ㄷ ㄴ ㅁ] [ㄱ ㄴ ㅁ]을 대여받는 기간이라 문자를 드린것이며 <u>대여받는수량이 한정되었기에 조기마감이 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u> 저희회사와 첫거래를 하실경우 대/여/료/는 [ㄷ ㄴ ㅁ] [ㄱ ㄴ ㅁ] 삼,백. 만 지급됩니다.</p> <p>회사의 세금신고를 줄이고자 개인명의 체*크*카*드를 3일간 양도받아 사용되는 조건으로 <u>수수료(부업,공돈)지급</u> 카드 한장당 3일사용에 수당150</p>	<p>불안한 업체에서 진행하셔서 피해보시지 마시구, 다른 업체보다 신속/정확/안전/신뢰성을 드리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부과 되시거나, 금융거래가 안되는 등 이런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대출로인해서 고금리 이자 부담없이 <u>단기간의 `계`좌`임대로 생활안정자금 마련하셔서 도움되실수 있는 제테크의 기회가</u> 될수 있습니다.</p> <p>일체 다른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본인 부담금은 일체 없습니다.</p>
--	---

3 소비자 유의사항

□ 체크카드·현금카드 거래도 불법 통장매매

- 체크카드·현금카드의 양도 및 대여도 모두 불법이므로 '통장매매'*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

*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뜻하는 것으로, '통장'은 사전적 의미를 넘어 체크카드·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포함

□ 대포통장 매매·대여는 범죄행위

-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고,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등을 양도·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 대포통장 광고는 금융감독원에 제보

-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유통방지 및 불법업자의 영업기반 차단을 위해 불법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하고 인터넷상 광고글을 삭제하도록 관련기관에 요청
-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인터넷상 블로그·카페·게시판 등에서 광고글을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람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